

『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정근수 의원 외 10인

2. 제안이유

-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는 보호자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 번째 이상 출생아로 함(안 제3조)
- 건강보험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, 시와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, 보험계약은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승낙일로 함(안 제4조)
- 신청인은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읍면·동장에게 제출하고,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, 보험기관의 보험계약 확인 후 보험료 지급 (안 제5조 및 제6조)
- 신생아 또는 보호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, 신생아 사망시 지원자격 상실(안 제7조)

- 보험기관 선정은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공모 선정 (안 제8조)
- 지원대상자의 사망 및 타시군 전출 등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만기 환급금은 구미시에 귀속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「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출산장려 및 건강하고 활기찬 복지사회를 구현코자 관내에서 출생한 셋째아 이상 신생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 임

○ 주요 제정내용은

- 조례는 총 12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, 용어정의를 규정하고
- 안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는 보호자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 번째 이상 출생아로 규정하였으며
- 안 제4조 건강보험 지원기준은 예산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, 시와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보호자로 하되 보험계약은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승낙일로 하였음

- 안 제5조 및 제6조 지원신청과 절차는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읍·면·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,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보험기관의 보험계약 확인후 청구서에 의거 보험료를 지급토록 하였음
- 안 제7조 및 제8조 지원자격 상실은 신생아 또는 보호자의 타 지역 전출과 신생아 사망으로 규정하였으며, 보험기관의 선정은 건강보험 지원 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토록 규정하였음
- 안 제9조 보험료 환수 및 중지는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타 시·군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료 지원중지 및 계약을 해지하며, 중도해지 및 만기 환급금은 구미시에 귀속토록 규정하였음

○ 조례안 검토결과

-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시행 초기에는 지원예산이 많이 소요되고, 또한 단기간에 기대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,
- 중·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신생아에 대한 폭넓은 안정적 보장으로 다자녀가구의 출산, 양육 등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이라 사료됨